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
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월 26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2월 7일

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
하여 법령해석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 운영

- 당 초 : 필요시 배출 가능

- 변 경 : 일몰 후 ~ 일출 전(20:00 ~ 익일 06:00)로 지정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제2항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(환경부 2003. 7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 의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-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, 일몰 후부터 일몰 전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를 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